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 수렴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51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5.
3. 회부연월일 : 2024.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에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생략)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는 총 1,176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17조 165억원을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음.

<2022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현황>

부처명	대학 재정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비율
교육부	106	11조 4,532억원	6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	3조 3,470억원	19.7%
산업통상자원부	120	5,706억원	3.4%
고용노동부	12	4,769억원	2.8%
문화체육관광부	84	1,502억원	0.9%
보건복지부	86	1,464억원	0.9%
농림축산식품부	74	1,378억원	0.8%
기타	494	7,344억원	4.2%
계	1,176	17조 165억원	100%

1,176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특허청의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각 지역산업, 인재육성 등과 연관되어 있음.

대학, 대학원은 그 자체로 소재지역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침.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학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최근 대학의 기능으로 강조되는 산학협력이나 평생교육 등도 지역 기업 및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현재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과 지역대학 간 전략적 연계가 중요한 시점으로 교육부에서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것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신설·변경 이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범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확인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지방비 매칭 가능성을 줄여 시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동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